2022년도 제7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2. 5. 2.(월요일),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백대용(분과위원장), 박재화, 오영주, 이성엽, 송수현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2-58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137건(안건번호 제2022-29012호~30148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2-29012호~29019호(순번 1번~8번)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또는 매개 사이트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 중인 게시물로,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오로지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공중의 이용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작성된 게시물로서 '저작권 침해 정보'임이 인정되는 점, 해당 정보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 합법 시장 및 저작물의 가치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점, 실질적인 시정권고의 이행을 통하여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2-29020호(순번 9번)은 ◈◈◈ 블로그에서 방송의 일부를 이용 중인 사안으로, 게시자가 촬영장소를 제공할 당시 방송의 권리자로부터 영상의 이용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용허락이 없는 경우에도 공정이용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부결함.

  그 외에 안건번호 제2022-29021호~30148호(순번 10번~1137번) 불법

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244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 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6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763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2-13739호~14501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6개에 접속할 수 있는 763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결과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7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2-5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 관련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저작물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참석 위원 전원: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1호 안건 회의록은 비식별 처리 후 원안대로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함.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제2022-74회 시정권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람.

- 강나래 전문위원: 이번 심의안건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정보통신망

을 조사하여 발견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 등 36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2,253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관련 법령 및 심의 기준은 모두 검토보고서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 내지 8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 ♠♠♠♠ 블로그에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인 '□□□', '◆◆◆◆◆' 등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안 총 8건임.

순번 1번~8번의 게시자는 무료로 웹툰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한다는 취지로 '○○○○', '●●●●' 등 불법 복제된 웹툰을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해 소개하면서, 해당 사이트로 연결되는 다양한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게시물에서 제공 중인 직접링크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먼저 순번 1, 5, 6번과 같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사이트의 링크를 모아둔 주소 업데이트 사이트로 연결되는 경우임. 다음으로 순번 3, 4번과 같은 주소 갱신 알림 사이트로 연결되는 형태임. 특정 불법복제물 제공 사이트의 대체사이트의 URL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임. 마지막으로 순번 2, 7, 8번과 같이 바로 불법복제물 제공 사이트로 연결되는 경우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을 통해 접속 가능한 사이트의 대부분은 우리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구글'에 검색결과 제한을 요청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대체 사이트임. 관련한 정보는 검토보고서 12

페이지부터 13페이지에 표로 정리해 두었음.

먼저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 판단 부분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불법복제물을 직접 전송 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심의대상 게시물의 직접링크를 '저작권이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 보아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문제됨.

저작권법 및 판례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우리 심의위원회는 대법원 및 하급심의 판례를 참고하여 게시자에게 불법행위 방조의 민·형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다만 민·형사 판례 모두 불법복제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 중인 웹사이트에 대하여 불법행위 방조를 인정한 것으로, 불법복제물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또는 매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심의대상 게시물과는 불법복제물 제공의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임.

그러나 이는 단순히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과정과 절차의 차이이며, 이러한 차이는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이용하는 자들 사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자 등에 의한 사이트 차단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고안된 것임. 따라서 모든 절차는 불법복제물 전송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또한 심의대상 게시물의 링크를 통해 접속 가능한 사이트는 대부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접속차단하여 우리 심의위원회가 '구글'에 검색결과 제한을 요청한 사이트로, 해당 사이트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오로지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공중

의 접근 가능성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작성되어 이용되고 있는 바, 저작권 침해의 방조로 보아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임.

다음으로 시정권고의 대상에 대한 판단임. 우리 심의위원회는 원천게시물이 국내 서버에 저장된 경우에는 원천게시물에 대하여, 해외 서버에 저장된 경우에는 링크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하고 있음. 따라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 중인 심의대상 게시물의 경우 마땅히 링크게시물인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해야 할 것임. 다만 일부 순번의 경우 국내 서버의 설치형 블로그에 게시된 것으로, 이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게시자가 동일하여 현실적으로 시정권고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음. 따라서 실질적인 시정권고의 이행을 통하여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비교적 시정권고의 이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관련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우리 심의위원회는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 시장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아니한 점을 들어 시정권고를 가결한 바 있음.

종합하면,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오로지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공중의 이용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작성된 게시물로서 '저작권 침해 정보'임이 인정되는 점, 해당 정보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 합법 시장 및 저작물의 가치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점, 실질적인 시정권고의 이행을 통하여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각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순번 1번부터 8번까지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정보를 제공 중인 블로그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을 구함.

- A 위원: 순번 1번 게시물 다시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람. 내용만 보면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을 독려하는 것으로 보임.

- 강나래 전문위원: 그러함. 게시물의 내용 자체는 온라인상의 무료 웹툰의 대부분은 불법복제물로,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나, 그 실질은 링크를 통하여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있음. 최근까지도 링크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됨.

- B 위원: 게시자가 링크 제공을 통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링크 게시 행위에 따른 실익이 있는지 의문임.

- 강나래 전문위원: 통상은 게시물에 광고를 붙여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함. 다만 순번 1번 게시물의 경우 광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을 통하여 연결되는 사이트로부터 수수료 등을 지급받고 있을 가능성도 있음.

- A 위원: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은 링크게시물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매번 불법복제물 제공 사이트를 검색할 필요 없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됨.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들과 같이 ☆☆, ♠♠♠♠ 블로그의 게시물인 경우 시정권고가 이루어지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순번 1번의 링크게시물을 통하여 연결되는 웹페이지와 같이 설치형 블로그에 게시된 게시물의 경우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러한 경우 검색결과 제한 등으로 접속을 제한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할 것임.

- 강나래 전문위원: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난 제2022-15회 검색결과 제한 심의부터 검색결과 제한 요청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 A 위원: 불법복제물 전송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고도화된 방법으로 링크를 제공하고 있음.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매우 용이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마땅히 인정된다는 의견임.

- C 위원: 웹툰의 합법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됨. 최근 웹툰 플랫폼들이 특정 작품 또는 특정 회차를 유료로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그러한 플랫폼에서 웹툰을 유료로 이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무료로 웹툰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다고 하면 이용을 고려해 볼 가능성이 큼.

- B 위원: 수수료 등의 형태로 이익을 얻고 있다면 더욱 시정권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임.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당연히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 E 위원: 우리 심의위원회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 중인 링크게시물에 대하여 일관되게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있음. 해당 사안의 경우 그 단계와 절차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결국 불법복제물의 전송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불법성 판단을 달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임. 수익 창출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성이 인정되므로 가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실효성 등에 대한 소수의견이 있기는 하나 기존 우리 심의위원회가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게시물에 대하여 가결하던 사안과 달리 보기 어렵고,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 바 시정권고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보임.

- B, C, E 위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순번 1번~8번에 대해서 시정권고 가결하도록 하겠음.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다음으로 순번 9번임. 국내 방송물 '▽▽▽▽ ▽▽▽▽'의 일부를 복제·전송하고 있는 사안 총 1건임. 해당 블로그는 "★★ ★★★ ★★★★"라는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식 블로그로, 공지사항이나 홍보자료

등을 게시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방송물 중 해당 업체의 업장이 노출된 부분만을 편집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방송물의 약 6분의 1 분량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원저작물을 편집하여 게시하였으나, 원저작물의 일부를 잘라내어 이용하고 있을 뿐 새로운 창작성이 가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제권 및 전송권의 침해로 볼 수 있음.

다만, 게시자가 촬영장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제작사 등과 어떠한 계약을 체결했는지 알 수 없음. 가령, 게시자가 장소의 제공 또는 협찬을 조건으로 업장이 노출된 방송 분량에 대하여 홍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을 받았을 수도 있음. 만약 그와 같은 이용허락이 존재한다면, 이는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없음.

만약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없다고 하여도, 심의대상 게시물은 게시자가 운영하는 업장이 노출된 부분에 한정하여 전체 방송분의 약 6분의 1 분량을 이용하고 있고, 게시자가 자신의 업장을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공 중인 바 일반적인 불법복제물 전송 사안과 동일하게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은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합법 시장을 위축시켜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을 파괴하는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임. 따라서 공정이용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음.

종합하면, 게시자가 촬영장소 제공 당시 방송의 권리자로부터 영상의 이용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용허락이 없는 경우에도 공정이용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

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블로그에 방송물 일부를 게시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E 위원: 기존에도 비슷한 안건 있지 않았는지?

- A 위원: 다수 있었음. 예를 들어 본인이 출연한 방송분에 대하여 게시한 경우 방송 출연과 관련하여 출연분에 대한 이용허락이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부결해왔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이 정리해준 원안대로 부결하도록 하겠음.

- 참석위원 전원: 부결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순번 9번은 만장일치로 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0번부터 순번 1137번까지 총 2,244건의 모니터링 안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게임,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영화 '코다'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0번은 작년 8월 개봉한 해외 영화를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형식으로 자막과 함께

판매 중인 사안임.

(게임 '딜러스 라이프'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037번은 올해 2월 출시된 최신 게임 '딜러스 라이프2'를 웹하드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사안임. 합법 시장에서 11,000원에 판매 중인 게임을 50포인트에 판매 중임.

(만화 '원피스'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061번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제공 중인 만화 '원피스'임. 522화의 불법 번역본을 제공 중임.

위 3건을 포함하여 순번 10번부터 순번 1137번까지 총 2,244개의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으로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게임, 만화 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해당 안건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게임,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0번~1137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29012호~29019호(순번 1번~8번)에 대하여는 시정권고로 가결, 안건번호 제2022-29020호(순번 9번)에 대하여는 부결하고, 그 외 안건번호 제2022-29021~30148호(순번 10번~1137번)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4쪽부터 17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2-13739호~14501호(순번 1~763번)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o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7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2년 제7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 5. 9.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

위원 송수현